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79

발의연월일: 2022. 11. 9.

발 의 자: 강기윤ㆍ이채익ㆍ박성중

윤상현 · 서범수 · 윤영석

김선교 · 임병헌 · 최춘식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를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기관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	
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	
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u>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u>	1 <u>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u>
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	<삭 제>
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	
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	
<u>는 경우</u>	
<u>3.</u> <u>제1호 또는 제2호</u> 의 진료 과	<u>2.</u> 제1호
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	
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	
귀·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	
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u>경우로</u>	<u>경우</u>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